남원시
NAMWON CITY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람	기관의 장

제29호 2016. 7. 08(금)

조례

○ 남원시 조례 제 1273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 1274 호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19

규칙

○ 남원시 규칙 제 577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 남원시 규칙 제 578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공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43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 남원시 공고 제 2016- 851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03

회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7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273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을 “위하여”로, “및 운영에 관하여”를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근무 하며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 단원"이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8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습 및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4. "준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습 및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목적 수행에”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남원시립국악단 구성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장, 공연기획실, 예술단을”을 “공연기획실, 예술단, 연수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외부인사채용이”를 “외부인사 채용이”로, “ 경우 의회의”를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의”으로,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를 “마친 후 공개경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장은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공연기획실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악장, 지휘자, 안무자 중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예술총감독으로 겸직하도록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예술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외부인사로 영입할 경우 정원은 52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에서”를 “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의”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능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을 “탁월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악”을 “국악관련학”으로, “우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 준단원”을 “때에는 준단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단원”을 “정단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58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술감독”을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으로, “않으며, 예술감독의”를 “않으며,”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권자는”을 “시장은”으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반했을 때”를 “위반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제9조제2항제5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평정을”을 “평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술감독”을 ‘예술총감독“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당 과”를 “수당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출연료징수”를 “및 출연료 징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로, “얻

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2장 공연기획실・예술단”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연기획실) 공연기획실에 공연기획실장을 두되 단장이 임명하며 단원의 근무관리 및 공연기획, 운영, 의상, 소품, 악기 등 공연물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앞에 “제3장 공연기획실・예술단・연수부”를 삽입한다.

제17조제2항 중 “예술단 각 부에는 지도위원을”을 “예술단의 창악부에는 악장, 기악부에는 지휘자, 무용부에는 안무자를”로 한다.

③ 삭제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수부) ① 연수부에 연수부장을 두되 단장이 임명하며, 연수부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악연수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강사자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수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고자 하는 자는”을 “배우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정으로 인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악단운영”을 “국악단 운영”으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3장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를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로, “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의회”를 “남원시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제21조제2호 중 “전국규모”를 “전국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 전문지식”을 “전문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남원시 공무원중”을 “시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로, “사유가 있을 때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한다.

제23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악업무담당과장”을 “국악업무담당 과장”으로, “국악업무담당”을 “국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사용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 이를”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남원시립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 및 운영에 ----------.
제2조(위치)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남원시에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근무 하며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 단원"이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8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습 및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4. "준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습 및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 ----------. 1. ~ 4. (현행과 같음) 5.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신 설>	제2장 남원시립국악단 구성 및 운영
제4조(기구) ① 국악단에는 단장, 공연기획실, 예술단을 둔다. ②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구) ① ---공연기획실, 예술단, 연수부를 --. ② ----------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단장) 국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단, 국악단 운영 및 발전에 외부인사채용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단장) ①----------. ----------외부인사 채용이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의-마친후 공개경쟁으로 ----------.
<신 설>	② 단장은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공연기획실장이 겸직할 수 있다.
<신 설>	③ 예술단의 악장, 지휘자, 안무자 중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예술총감독으로 겸직하도록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예술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구성) ① 국악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 단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단원의 구성) ① --. 단,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외부인사로 영입할 경우 정원은 52명으로 한다.
② 단장은 국악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상임 단원을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습 및 출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에서 ----------.
③ 국악단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운영에 ----------.
제7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결원 중 2명 이내의 보충이 시급을 요할	제7조(단원의 모집) ① ---------- 탁월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후단 단서 조항 삭제>

경우 또는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는 수시 특별채용방법 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비상임 단원은 각 대학 국악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각 분야의 기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이 선발한다.	② ---------- 국악관련학---------- ---------- 우수한 사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단원에 결원이 있을 때 준단원중 기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우선 임명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또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바로 정 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 때에는 준단원---------- ----------. ---------- ---------- 정단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단원의 정년) ① 국악단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단,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60세를 정년으로 하되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단원의 정년) ① -------- -------- 60세-------. <단서 삭제>
② 예술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에는 제1항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재임명 될 수 없다.	②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 않으며, ----------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제9조(임기 및 해임) ① 국악단원	제9조(임기 및 해임) ① -------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시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권자는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 경우에는 ----------.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 ---------- --- 인정될 경우
2. 국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2. ---------- 인정될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3. ---------- 위반했을 경우
4. 평정결과 평정등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으로 인정될 때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 있을 경우
제10조(단원의 임무) ①·② (생략)	제10조(단원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따른다.
제11조(급여 및 실비보상) 국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급여 및 실비보상) ---------- 범위에서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제12조(평정) ① 국악단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평정을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평정) ① ---------- ---------- -- 평정은 ---------- --. 예술총감독---------- --------- 경우에는 ------- 받아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실기평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범위에서 ---------- -------- 수당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국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① ---------- ----------. ---------- --------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장료 및 출연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및 출연료 징수-- ---------- ---.
제15조(기금조성 및 운영) ① ~	제15조(기금조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은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 ---------- 받아 ---------.
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4. ---------- ---------- 받은 -----
제2장 공연기획실・예술단	<삭 제>
<신 설>	제3장 공연기획실・예술단・연수부
제16조(공연기획실) ① 공연기획실에 공연기획실장을 두되 단장이 임명하며,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공연기획실) 공연기획실에 공연기획실장을 두되 단장이 임명하며 단원의 근무관리 및 공연기획, 운영, 의상, 소품, 악기 등 공연물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연기획실은 단원의 근무관리 및 공연기획, 운영, 의상, 소품, 악기 등 공연물관리, 예술단 홍보, 연수반 운영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 공연기획실에 국악연수를 위하여 연수반을 두고 연수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한다. 단, 연수	③ 삭제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악연수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강사자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④ 삭제
제17조(예술단) ① (생 략)	제17조(예술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 각 부에는 지도위원을 두되 단장이 임명한다.	② 예술단의 창악부에는 악장, 기악부에는 지휘자, 무용부에는 안무자를 --.
③ 예술단의 지도위원 중에서 권위있는 사람을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예술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신 설>	제17조의2(연수부) ① 연수부에 연수부장을 두되 단장이 임명하며, 연수부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악연수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강사자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수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국악단에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 배우려는 사람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1. 국악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취소·중지된 경우 : 전액	1. ---------- 사정으로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단운영이 중지된 경우 : 전액	2. ---------- 국악단 운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장 자문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
제19조(기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악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9조(기능) 남원시립국악단 자문위원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국악단 운영에 관하	3. ---------- 운영에 ---

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구성) ① ---------- ---------- ---------- 남원시 의회 ----------.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호선(互選)----------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21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 ------- 사람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2. 전국 규모---------- ----------
3. 국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전문지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남원시 공무원중 국악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	5. 시 공무원 중---------- ----------
제22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 ---------- ---------- --- 인정될 경우
2. 국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여 위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 ---------- -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3. ---------- 있을 경우
제23조(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 ---------- 한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2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국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악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 국악업무담당 과장---------- ----------국악업무 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설의 사용) ① 국악단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의 사용) ① ------- ------- 사용하려는 사람은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사람은 ---- ----------.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	③ ----------

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사항은 ----------.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7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274 호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
3.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읍·면·동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의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 교육) 시장은 본청 및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읍·면·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7월 8일

남원시 규칙 제 577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령”을 “규칙”으로, “남원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그 밖에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직유관단체 등"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을 "시장"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시 소속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7조 중 “남원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당등으로부터”를 “정당 등으로 부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지원·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예산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당해업무”를 “해당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당해업무”를 “다만, 해당 업무”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선박·항공기”를 “건

설중기·청사·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의"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내의"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나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을 "사람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

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따라”를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령의 교육을”을 “강령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남원시의”를 “시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구 분	□ 골프 □ 사행성 오락 □ 여행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 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 당	행동강령 책임관	

[별표]

외부강의·회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	3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상한액에는 원고료를 포함한 금액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원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 ---------- ---------- ---- 남원시 소속 공무원---- ---------- ----------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규칙----------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사람으로서 ----------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아. 그 밖에 행정기관------- ---------- ---------- ---------- ----------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2. ---------- ----------

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라.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 ------- 그 밖에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직유관단체 등"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및 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

부행정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남원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 ---------- ------- 경우에는 ----------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경우에는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 따른 ---------- 상응----------.
<신 설>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등을 ---------- ---------- ----------. ----- 시장---------- ---------- ---------- ----------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시 소속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남원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 ---------- 시에 ----------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 정당 등으로 부터 ---- ---------- ---------- ---------- 적은 ------ ---------- ----------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지원·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예산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지적업무등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이후 2년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당해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적용한다.	② ---------- ---------- ---------- 해당 업무---------- ---------- ----------. 다만, 해당 업무 ---------- ---------- ----------.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 ---건설중기·청사·관사 --- ---------- ---------- ---------- ---------- -------.
<신 설>	②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 ----------. ------- ---------- ---------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1. ---------- -- 따라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 이내의)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 ---------- ---------- 이내--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 ---------- ----------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1인당 3만원 이내의)의 선물	2. ---------- ---------- ---------- ---------- 이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사람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 ----------. ---------- ----------.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제3항까지---------- ----------.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 ---------- ----------.
<신 설>	제14조의3(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

	1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
第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ㆍ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	第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 ------------------------- ------------------------- ------------------------- ------------------------- ------------------------- ------------------------- ------------------------- --------- 따라 ----------- -----------. ----------- ------------------------- ------------------------- -------------- 예외로 한다.

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② ---------- ---------- ---------- ---------- ---------- -. 또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생 략)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 ---------- ---------- ---------- 따라 ----------.
제17조(채무보증의 제한) 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 략)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 등) (생 략)	제21조(징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 ---------- ----- 붙여 ---------- ----- 따라 ----------.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 ---------- ---------- ---------- ----------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③ ---------- ---------- -- 등은 ---------- ---------- ---------- ----------. ---------- 등 즉시

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 -- 공무원에게 ---------- ---------- ---------- ---------- ----------.
②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 ------ 강령을 교육 -------- ----.
<신 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남원시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 시 소속 ---------- ---------- ---------- ---------- ----------.

③ (생 략)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 제2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7월 8일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통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모집하며 단원의자격”을“통하여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며 단원의 자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장”을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공연기획실 단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수강사와 예술단원은 실기(85퍼센트)와 면접(15퍼센트)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남원시립국악단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등을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등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단원의 서약) 단원은 임명 시 시장에게 별표 3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5를, 기말수당”을 “5를”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의하여 획정하되,경력”을 “따라 획정하되,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으로하며”를 “1년으로 하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공연시 예산의 범위안”을 “특별공연 시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남원시여비조례」”를 “「남원시 여비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기량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를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로, “및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 한다”를 “및 평정방법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단원”을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제외

한 상임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단원(강사제외), 지도위원”을 “소속단원, 연수강사, 악장, 지휘자, 안무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술단원 : 실기 70퍼센트, 근무성적 30퍼센트

제13조 제2항제3호 중 “인하여 병가중인 자”를 “병가중인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속년수 20년 이상인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원은 실기평정을 면제하고 근무평정만으로 평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악업무담당”을 “부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평정참고자”를 “평정 참고자료”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최대한노력한다”를 “최대한 노력한다”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40퍼센트, 실기평정은 60퍼센트”를 “30퍼센트, 실기평정은 70퍼센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홀수년도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제18조 제1호 중 “예술감독”을 “예술총감독”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출된 평가 방식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을 받은 단원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되 경고의 시효는 10년으로 하고, 누적 경고 횟수가 연속 2회에 도달한 상임단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평정점수가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단원은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한다.
2. 연속 2회 경고 처분을 받은 단원은 1회 호봉승급을 보류한다.
3. 누적 경고 횟수가 3회에 도달한 단원은 차 하위 직책 또는 호봉으로 강등할 수 있다.
4. 누적 경고 횟수가 4회에 도달한 상임단원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는 재임명할 수 없다. 단, 해임 시기는 2개월 이내에 유예할 수 있다.

②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근속승진 임용) ① 근속년수 20년 이상인 단원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인 준단원은 정단원으로 정단원은 차석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상위직급으로 근속 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 승진된 인원만큼 근속 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한다.

③ 근속승진된 자가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한다.

제21조제5항 중 “유료공연시 20명이상의 단체입장액”을 “유료공연 시 20명 이상 단체입장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출연료징수”를 “출연료 징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연수반 구성)”을 “(연수부 구성)”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연수반은”을 “연수부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제4항 중 “연수반”을 “연수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연수반 운영)”을 “(연수부 운영)”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연수반은”을 “연수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수반”을 “연수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육효과증대”를 “교육효과 증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위이내 입상자”을 “장관상 이상 수상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8조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제2호 중 “하였을 때”를 “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승인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다른공연에 출연 하였을 때”를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 하였을 경우”로, 같은 조 제4호 중 “각기 소속부서원”을 “소속 부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단외출, 무단조퇴 4회 이상일 경우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일 경우

제31조제3항 중 “공연기획실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5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5의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 15의3의 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과 별표 15의4 복무(근무실태)위반자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을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 보수”를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개한다”를 “뉘우치게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당해 기간동안”를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1,2,4,5,7,9,10,11,12,13,14,15,15의2,15의3,15의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2.8.14>

국악단 상임단원의 직책 및 정원(제2조 관련)

직 책		정 원	비 고
계		52	
단 장	국악단장	1	
	부 단 장	1	공연기획실장 겸임가능
	예술총감독	1	지도위원 겸임가능
공연기획실	공연기획실장	1	
	기획·연출	1	
	연구·홍보	1	
	스 탭	2	
예술단	악 장	1	창악부
	지휘자	1	기악부
	안무자	1	무용부
	수 석	6	
	차 석	6	
	정단원	20	
	준단원	5	
연수부	연수부장	1	연수강사 중 지정
	연수강사	3	

[별표 2]<개정 2012.8.14>

국악단 상임단원의 자격(제3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국악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외부인사 채용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에서 지도위원 이상의 간부단원을 역임한 사람 2. 법인으로 등록된 국악관련 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임원으로 국악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공 연 기획실	1. 공연기획실장 : 공연기획과 행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공공기관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2. 기 획 : 2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기획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연 출 : 국공립단체 및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예술단체 연출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4. 연 구 : 관련학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관련대학, 공공기관에서 국악에 관한 연구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홍 보 :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홍보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스 탭(음향, 조명, 무대) ① 전자통신, 음향, 전기분야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국·공립기관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예술단체에서 동일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예술단원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 중 공공기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3.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4.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기능이 우수한 사람
연수부	1. 연수강사(1급) ①「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② 해당분야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연수강사(2급) ① 해당분야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자 ③ 국악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별표 4]<개정 2012.8.14>

급여지급기준 및 초임호봉획정기준(제6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지급기준
국악단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5급 봉급 5호봉 상당액
부단장, 예술총감독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3호봉 상당액
공연기획실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2호봉 상당액
악장, 지휘자, 안무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2호봉 상당액
수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차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정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준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9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스탭, 기획·연출, 연구·홍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연수강사(1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봉급 1호봉 상당액
연수강사(2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9급 봉급 1호봉 상당액

[별표 5]<개정 2012.8.14>

수당지급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관리수당	공연수당 (1회당)	비고
국악단장	200,000	100,000	100,000	소품, 의상, 악보, 악기 자동차 관리 50,000원	• 평일야간 30,000원 • 휴일 및 상설공연 40,000원 • 국외공연 50,000원	
부단장, 예술총감독	150,000	80,000	70,000			
공연기획실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연수부장	140,000	70,000	근속년수 5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60,000원			
수 석	130,000					
차 석	120,000					
정단원, 준단원	90,000					
강 사	130,000	50,000				

※공연기획실 직원(스탭, 기획·연출, 연구·홍보)은 예술단 해당직급 수당지급기준 준용

[별표 7]<개정 2012.8.14>

비상임단원 수당지급표(제9조 관련)

근무기간	수 당	비 고
6개월 미만	1일 50,000원	
6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1일 60,000원	
12개월 이상 ~ 18개월 이하	1일 70,000원	
18개월 이상	1일 80,000원	

[별표 9]<개정 2012.8.14>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제12조 관련)

평정구분	평 정 항 목			배 점	평 정 방 법	비 고
실기평정	실기능력	창의성	18점	70점	실기평정위원이 피 평정자의 실연을 통해 실기능력 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	예술단원
		표현력	18점			
		해석력	17점			
		난이도	17점			
근무평정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10점	70점	각 직무능력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	공연기획실 연수부 기 타
		고객지향	10점			
		업무지식	10점			
		정보수집관리	10점			
		창 의 성	10점			
		실 행 력	10점			
		윤리의식	10점			
	직무수행태도	적극성	6점	24점	연습량, 참여도	공 통
		협조성	6점		동료애, 인간관계	
		성실성	6점		준비성, 완결성	
		소속감	6점		조직에 대한 애착	
기 타	국악단 기여도		6점	6점	공연출연회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평정	공 통
	가·감점	가 점	10점			공 통
		감 점	10점			
종합평정						

※ 평정배점 비율

◇ 예술단원

실기평정결과 70%,

근무평정결과 30%(직무수행태도 24%, 국악단 기여도 6%) 가·감점 ±10

◇ 공연기획실, 연수부 및 기타

근무평정결과 100%(직무수행능력 70%, 직무수행태도 24%, 국악단 기여도 6%)

가·감점 ±10

[별표 10]

(실기평정 대상자)근무성적 평정표(제14조 제1항 관련)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 . ~ . . .)

부 서	직 책	호 봉	성 명

□ 근무실적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1	적극성	6	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협조성	6	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	성실성	6	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	소속감	6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	기여도	6	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				

□ 근무평정 가점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	2		
2	수 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 근무평정 감점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실기평정 제외자) 근무성적 평정표(제14조 제1항 관련)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 . ~ . . .)

부 서	직 책	호 봉	성 명

□ 직무수행능력 평가(7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점수
1	자기계발	10	* 업무능력 향상 및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고객지향	10	* 업무과 관련하여 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업무지식	10	*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이해· 숙련·활용한다.	
4	정보수집 관 리	10	*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한다.	
5	창 의 성	10	* 담당업무 수행시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실 행 력	10	* 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7	윤리의식	10	* 기본적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적 의식을 발휘한다.	
총 점				

□ 근무실적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평가지표	점수
1	적극성	6	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	협조성	6	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	성실성	6	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	소속감	6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	기여도	6	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				

□ 근무평정 가점

연번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건수	점수 (배점×건수)
1	경력 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	2		
2	수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3	전통 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총 점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 근무평정 감점

감점항목	정직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별표 11]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표(제14조 제2항 관련)

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가점항목	경력개발	석·박사 학위 취득	2
		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
		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	2
		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	2
	수상실적	대통령상	5
		국무총리상	3
		장관상, 시도지사상	2
		시장상, 국악단장상	1
	전통계승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	2

감점항목	출연 정지	감봉	견책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	지각	경고 주의	기 타
	-5점	-3점	-2점	-1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별표 12]

평 정 주 체(제17조 관련)

구 분	평정주체
근무평정	〔단장이 부시장인 경우〕 부단장, 담당과장, 부시장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국악단장, 담당과장, 부시장
실기평정	1. 각 분야별로 위촉된 실기평가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종합평정	업무담당, 담당과장, 부시장

[별표 13]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제21조 관련)

대 상	범 위	비고
1. 일반공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2.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국악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든 입장객	

[별표 14]<개정 2012.8.14>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제22조 관련)

기 준	출 연 료		비 고
	관 내	관 외	
독창,독무,독주	25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반주자 포함 5명 이내
10명 미만	400,000원 이상	800,000원 이상	
10명 이상 ~ 20명 이하	600,000원 이상	1,200,000원 이상	
20명 이상 ~ 30명 이하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30명 이상	1,5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 1.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산정
2.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 제공
3.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

[별표 15]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라. 기타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나. 단에서 기획된 공연작품에 대한 공연거부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다. 사적출연 위반	해 임	출연정지	출연정지	견 책
라. 기타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5. 청렴의무 위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나. 성폭력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다. 성희롱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라. 기타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8. 집단행위금지 위반	해 임	출연정지	감 봉	견 책

※ 비고 : 제6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5의 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th><th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th><th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th></tr>
<tr><th>수동</th><th>능동</th><th>수동</th><th>능동</th><th>수동</th><th>능동</th></tr>
<tr><td>100만원 미만</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3">중징계</td></tr>
<tr><td>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경징계·
중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2">중징계</td></tr>
<tr><td>300만원 이상</td><td colspan="2">중징계</td></tr>
</table>

※ 경징계 : 견책, 감봉
중징계 : 출연정지, 해임

[별표 15의 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table>
<tr><th colspan="2">유 형 별</th><th>처리기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td>단순 음주운전</td><td>경 고</td><td rowspan="11">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td></tr>
<tr><td>단원 신분을 속인 경우</td><td>경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td rowspan="4">경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td><td rowspan="6">중징계</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td></tr>
<tr><td colspan="2">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r>
</table>

※ 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5의 4]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위반횟수 / 유 형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지 참	-	-	주 의	주 의	경 고
무단외출	-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무단조퇴	-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무단결근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출연정지
복수유형 위반시 (지각,무단외출·조퇴·결근시)	경 고	견 책	감 봉	출연정지	해 임

※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평 정 대 장(제16조 관련)

분야	직 위	성 명	최 초 임용일	실기평정 (70)	근무평정 (30)	가점	감점	총점	조정	종합평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 ---------- ----------.
제3조(단원의 모집 및 자격)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단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등을 통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모집하며 단원의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원의 모집 및 자격) ---- ---------- ---------- ----- 통하여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며 단원의 자격--------- ----------.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 ---------- 같다.
1. 단장은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한다.	1.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 공연기획실 단원--.
2. 연수강사를 제외한 공연기획실 단원은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한다.	2. 연수강사와 예술단원은 실기(85퍼센트)와 면접(15퍼센트) 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공연기획실 연수강사와 예술단원은 실기(85퍼센트)와 면접(15퍼센트)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삭 제>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단장 및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 남원시립국악단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전형위원은 국악의 권위자 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 등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의 임명) ① 단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단원의 서약) 단원은 임명시 시장에게 별표 3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임명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단원은 임명시 시장에게 별표 3에 의한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급여 및 수당)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는 별표 4를,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관리수당, 공연수당은 별표 5를,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	제6조(급여 및 수당) ---------- 범위---------- 5를----------

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한다.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봉급조정수당)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봉급조정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을 별표 4에 의하여 획정하되,경력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합산한다. ② 호봉정기승급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단원---------- 따라 획정하되, 경력----------. ② ---------- 1년으로 하며----------.
제9조(비상임 단원 수당) ① (생략) ② 순회, 특별공연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상임 단원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공연 시 예산의 범위----------.
제10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남원시여비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지급기준) ---------- 출장할 경우「남원시 여비 조례」----------.

제11조(사례금 지급) 국악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하여 객원에게 별표8과 같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례금 지급) ---------- ---------- ---------- 범위---------- -----.
제12조(평정의 구분) 단원의 근무성적 및 실기향상도를 평가 심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 및 기량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표 9의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 한다.	제12조(평정의 구분) ---------- ---------- ---------- --- -----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 ---------- ---------- 및 평정방법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단원 평정) ① 단원의 평정은 상임단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3조(단원 평정) ① ---------- ---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을 제외한 상임단원 ---------- ---------.
1. 공연기획실 소속단원(강사제외), 지도위원 :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시행	1. ---------- 소속단원, 연수강사, 악장, 지휘자, 안무자---------- --
2. 예술단원, 연수강사 : 실기 60퍼센트, 근무성적 40퍼센트	2. 예술단원 : 실기 70퍼센트, 근무성적 30퍼센트
② 단원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정 출산휴가자와 공상 및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병가중인 자	3. ---------- ---------- 병가중인 단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근속년수 20년 이상인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원은 실기평정을 면제하고 근무평정만으로 평정한다.
제14조(근무평정) ① (생 략)	제14조(근무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가·감점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한다.	② ---------- -- 따른다.
③ 단장이 부시장인 경우 평정자는 국악업무 담당이 되고, 확인자는 국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조정자는 부시장이 된다. 단, 평정자는 부서별 책임자의 평정참고자를 토대로 평정할 수 있다.	③ ---------- ---- 부단장---------- ----------. --- ---------- 평정 참고자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실기평정) ① (생 략)	제15조(실기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실기평정은 별도의 기준을 세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되도록 최대한노력한다.	② ---------- ---------- ------ 최대한 노력한다.
제16조(종합평정) ① (생 략)	제16조(종합평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함께 받을 경우 근무평정은 40퍼센트, 실기평정은 60퍼센트를 반영하여 종합평정한다.	② ---------- 30퍼센트, 실기평정은 70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평정시기) 근무평정 및 실기평정은 매년 12월 20일 까지 시행한다. 다만, 국악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평정시기)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홀수년도 12월 30일 까지 시행한다. ----------.
1. 단장이 부시장인 경우 :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예술총감독---------- 경우에는 --------- 받아 ----------.
2.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 경우에는 ---------- 받아 ----------.
제19조(평정등급) ① 근무평정, 실기평정 및 종합평정은 평정대상 단원의 평정결과가 다음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근무평정 및 실기평정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③ 동점자의 경우 근무경력을 우선으로 하며, 근무경력이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린 단원을 우선으로 한다.

등급	평정	배분율	비고
수	총점 90점이상	현원의 5퍼센트이내	
우	총점 80점이상 90점미만	현원의40퍼센트이내	
미	총점 70점이상 80점미만	현원의 35퍼센트이내	
양	총점 60점이상 70점미만	현원의 15퍼센트이내	
가	총점 60점미만	현원의 5퍼센트이내	

제20조(평정에 따른 조치) 종합평정 결과 단원의 평정등급에 의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 산출된 평가 방식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을 받은 단원은 인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되 경고의 시효는 10년으로 하고, 누적 경고 횟수가 연속 2회에 도달한 상임단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평정점수가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단원은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한다.
2. 연속 2회 경고 처분을 받은 단원은 1회 호봉승급을 보류한다.

	3. 누적 경고 횟수가 3회에 도달한 단원은 차하위 직책 또는 호봉으로 강등할 수 있다. 4. 누적 경고 횟수가 4회에 도달한 상임단원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는 재임명할 수 없다. 단, 해임 시기는 2개월 이내에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②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의2(근속승진 임용) ① 근속년수 20년 이상인 단원 중 직전 2회의 평정(실기+근무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인 준단원은 정단원으로 정단원은 차석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상위직급으로 근속 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 승진된 인원만큼 근속 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한다. ③ 근속 승진된 사람이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

	으로 환원한다.
제21조(입장료 징수) ① ~ ④ (생략)	제21조(입장료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료공연시 20명이상의 단체 입장액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할인할 수 있다.	⑤ 유료공연 시 20명 이상 단체 입장객----------.
⑥ 입장료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⑥ ---------- 따라 ----------.
제22조(출연료 징수) ① 출연료징수는 별표 1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출연료 징수) ① 출연료 징수----------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 따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3조(연수반 구성) ① 연수반은 판소리(소리북 포함), 기악, 무용, 농악과정을 둔다.	제23조(연수부 구성) ① 연수부에는 ----------.
② 연수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선발한다.	② ---------- 가진 사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수반에는 별도의 객원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객원강사는 별표 2의 연수강사에 해당하는 자	④ 연수부----------

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연수반 운영) ① 연수반은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까지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연수부 운영) ① 연수부는 ----------.
② 연수반의 수업은 주당 5일,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수부----------. ----- 교육효과 증대----------.
③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 사람에게는 ----.
제25조(수강료)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수강료) ①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입상 후 1년간)	1. ---------- 장관상 이상 수상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적출연 등) ① 단원은 근무시간내 사적출연 등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적출연 등) ① -------근무시간 내 ---------- ---------- --------- 받아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창)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국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 ---------- --------- 사람에게 ------- --------.
제29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악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제29조(징계) ---------- ---------- 경우에는 ---------- ----------.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규칙을 위반했을 때	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 ---------- 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다른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3.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 하는 공연 이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였을 경우
4. 국악단의 권위나 각기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 소속 부서원---------- ---------- 하였을 경우
5. 지참(遲參), 무단조퇴, 무단이석	5. 무단외출, 무단조퇴 4회 이상

이 5회이상일 때와 무단결근이 3일이상일 때	일 경우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일 경우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업무 담당국장, 과장, 국악단의 공연기획실장이 되며 간사는 국악업무 담당이 된다.	③ ---------- ---------- ------- 부단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소행, 공적 그 밖에 정상참작하여 별표 1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5의 징계양계기준 및 별표 15의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 15의3의 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과 별표 15의4 복무(근무실태)위반자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제33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일부터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제33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 ----------.
② 출연정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
③ 감봉은 1월에서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한다.	④ ---------- 뉘우치게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호봉승급을 시킬 수 없다.	⑤ ----------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1. ----------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 -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43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7월 08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남원시 시설분담금은 1995년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이후 현재 까지 적용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누적 물가상승률 및 유사규모 지자체 시설분담금을 비교·검토하여 재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의 시설분담금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시설분담금표(제14조 제1항 관련)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원)		비고
	현행	변경	
13㎜	60,000	96,000	개조 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120,000	192,000	
25㎜	200,000	320,000	
32㎜	360,000	576,000	
40㎜	550,000	880,000	
50㎜	970,000	1,552,000	
75㎜	1,940,000	3,104,000	
100㎜	3,300,000	5,280,000	
150㎜	7,260,000	11,616,000	
200㎜	11,880,000	19,008,000	
250㎜	47,300,000	75,680,000	
300㎜	77,000,000	123,200,000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7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56 남원시 오들1길 56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전화 : 063-620-6873, FAX : 063-620-672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자 김대철(전화 : 063-620-68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급받고자 하는”을 “공급받으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노후로 인한”을 “노후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을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고지일로”를 “고지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하여 과오납”을 “과오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의에 대하여”를 “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있을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에 대하여”를 “신고사항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하여 수도”를 “수도”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신청에 의거하여”를 “신청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에 대하여는”을 “주택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납부에 연대책임”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급수전에 대하여는”을 “급수전은”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계량기에 의하여”를 “수도계량기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정할 때”를 “판단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를 “말일에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을 “기관은 예외로 한다.연체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를 “납부고지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납액에 대해서는”을 “미납액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을 “임시급수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무에”를 “유무에도”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필요에 의하여”를 “필요로”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호나목 중 “40밀리미터이상”을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40밀리미터이상”을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6조제5호 전단 중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를 “개인서비스업소”로 한다.

제37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포탈하고자 한”을 “포탈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시민”으로, “자에게도”를 “사람에게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에 의하여”를 “재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망실하였을 때”를 “잃어버렸을 경우”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표(제14조 제1항 관련)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 (원)	비 고
13㎜	96,000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192,000	
25㎜	320,000	
32㎜	576,000	
40㎜	880,000	
50㎜	1,552,000	
75㎜	3,104,000	
100㎜	5,280,000	
150㎜	11,616,000	
200㎜	19,008,000	
250㎜	75,680,000	
300㎜	123,20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 ---------- ---------- ----------. ---------- ---------- 경우에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 공급받으려는 ---------- ---------- ---------- -------- 받아야 ---.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세	② ---------- ---------- ---------- ---------- ---------- ---------- -----따라----------

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별지 제2호서식)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 경우에는 ------ ----------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설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 - 한다. ---------- ---------- 경우에는 ------- ---------- ----------

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 --- ---------- ---------- --- 노후에 따른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설비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 -------. ---------- ---------- --------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 ---------- - 경우에는 ---------- ----------.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	③ ---------- ----------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 ----------. ---------- -------- 따라서 ---------- ---------- 예외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 ---------- ---------- ---------- ---------- 하려는 ---------- ---------- ----------.
제14조의2(시설분담금의 납부 및 정산 등) ①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이를 부담할 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설분담금의 납부 및 정산 등) ① ---------- --- 고지일---------- ----------. ---------- ---------- ---------- -------.
② 시설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 ----- 과오납----------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수설비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	제15조(급수설비공사의 직권시행) ① ----------

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사유로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설비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 이의- ---------- ----------.
② 급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 등은----------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 받으려는 --- ---------- ----------. - ---------- 사유로 ---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① ---------- ---------- --- 경우---------- ----------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별지 제3호서식)	1. ---------- ---------- -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별지 제4호서식)	2. ---------- ---------- 경우- ----------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 -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신고사항을 ---------- --- 관계공무원에게 -------- ---------- ---------- ----------.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 수도 ----------.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 략)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 신청하여 ----------. 주택은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 납부에 연대책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② (생 략)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③ ---------- 급수전은 ---------- 경우 --------

수 있다.	-------.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경우에는 ---------- ----------.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수량으로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수도계량기로 ---------- ----------. ---------- 경우에는 ----------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1. ---------- -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2. ----------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3. ---------- 경우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4. ---------- --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 ---------- 판단될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 ---------- ---------- ---------- ---------- ------ 경우에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말일에 납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 ----- 경우에는 ---------- ----------.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제30조(연체금) ---------- ---------- ---------- 경우에는 ------ ---------- ----------. - ---------- 기관은 예외로 한다. ----------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	----------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1조(납부고지) ① ------ 납부고지서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안내문을 발부한다.	③ ---------- 미납액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시급수와 요금)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임시급수와 요금) ① ----------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 받으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사유가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 유무에도 ----------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 경우에는 ----------.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 필요로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4조(수수료) ---------- ----------.
1. 설계수수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 40밀리미터 이상 ----------.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나. ---------- 40밀리미터 이상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 받으려는 -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 --. ---------- 따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	5. ---------- 개인서비스업소----------.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100분의 1에 해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 등에게는 ----------

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받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 자에게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4. ---------- 포탈하려는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고자	④ ---------- 하려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읍·면·동 ----------.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시민----------사람에게도 ----------.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재판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④ ---------- 사람으로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 잃어버렸을 경우----------.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 ---------- ---------- ---------- 자에게---------- ---------- ----------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 ---------- -- 부과하려는 ---------- ---------- ---------- ----------.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 ---------- 자에게------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 ---------- -------- 경우에는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시행규칙) ----------필요----------.

공고 제2016 - 851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7월 08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포함

○ 관련 법률 명칭 및 조항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7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주민복지과(전화 : 063-620-6210, FAX : 063-620-671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보훈수당지원담당자 조미경(전화 : 063-620-62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6.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의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안 제3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으로 명칭 및 조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단서 신설 (안 제3조제4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4. ~ 2016. 7. 24.(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7호”를 “제7호(사망시, 배우자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을 받는 사람

제3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 (단, 배우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급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첨부하고”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등록전입신고를”을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